

보도자료3
(문답자료)

이 자료는 2025년 7월 31일(목) 17:00 이후 보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25. 7. 31.

기 획 재 정 부

목 차

I. 경제강국 도약 지원

1.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1) 국가전략기술 AI 분야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	1
① 현행 제도	1
① 추진 배경	2
② 개정 내용	2
③ 적용 시점	2
(2)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3
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3
② 적용 시점	3
(3)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4
① 현행 제도	4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4
③ 적용 시점	4
(4)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5
① 현행 제도	5
② 문화산업전문회사 현황	5
③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5
(5) 국가전략기술 미래형 운송·이동수단 분야 세제지원 확대	6
① 추진 배경	6
② 적용 시점	6
③ AI 지능형 자율운항(미래형 선박)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6
(6)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개편	7
① 현행 제도	7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7
(7)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8
① 현행 제도	8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8
③ 적용 시점	9
④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 예시	10
⑤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적용 예시	11
(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 강화	12
① 현행 제도	12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12
③ 적용 시점	12

목 차

2. 소상공인 등 세제지원 확대 및 상생협력 지원

(1)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39

① 현행 제도 39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39

목 차

3. 납세자 권익보장 및 편의 제고

(1)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 합리화	45
① 현행 제도	45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45
(2)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편	46
① 현행 제도	46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46
(3)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	47
① 현행 제도	47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47

목 차

III. 세입기반 확충 및 제도 합리화

1.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1) 법인세율 환원	48
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48
②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에 역행하는 것 아닌지	49
(2) 증권거래세율 환원	50
① 현행 증권거래세율 및 최근 조정 연혁	50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50
③ 시장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닌지?	50
(3)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	51
① 현행 기준	51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51
③ 양도세 회피를 위한 연말 매도 증가 등 시장 불안정은 없는지?	51
(4) 금융·보험업 교육세 개편	52
① 현행 제도	52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52
(5)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53
① 현행 제도	53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53
③ 적용 사례	54

2. 과세체계 합리화

(1)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종료 ..	55
① 현행 제도 및 종료 취지	55
(2) 비과세·감면 정비 현황	56
(3)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	57
① 현행 제도	57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57
③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는 것 아닌지?	57

(4)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확대	58
① 현행 제도 및 개정 취지	58
② 대주주 요건 없이 국외주식 과세는 과도한 것 아닌지?	58
③ 적용 사례	58
(5)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59
① 현행 제도 및 개정 취지	59
② 시행일('26.7.1.) 이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는?	59
③ 적용 사례	60
(6)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추가세 도입	61
① 내국추가세 개요 및 적용 예시	61
(7)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제출 서류 추가	62
① 현행 제도	62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62
(8)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	63
① 현행 제도	63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63
③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 아닌지?	63
(9) 우회덤핑 과세 범위 확대	64
① 현행 제도	64
② 개정 내용	64
③ 적용 사례	64

(1) 영리법인에 유증 시 상속세 납부의무자 확대	65
① 현행 제도	65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65
(2)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신설	66
① 현행 제도	66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66
③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실효성 있는 것인지?	66
(3) 독촉장 송달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	67
① 현행 제도	67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67

1 경제강국 도약 지원

1.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1) 국가전략기술 AI 분야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 (상세본 p.1)

① 현행 제도

□ (R&D 세액공제) 기업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 비율 세액공제

* (공제대상)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등

< R&D 세액공제 공제율(단위: %) >

구분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¹⁾	국가전략기술 ¹⁾
	당기분	증가분		
중소기업	25	50	30~40	40~50
중견기업	8~20 ²⁾	40	20~30, 25~35 ³⁾	30~40, 35~45 ⁴⁾
대기업	최대 2 ⁵⁾	25	20~30	30~40

1) 추가분: 최대 10%(R&D 지출액 / 매출액 × 3), 2) (~3년)20%, (4~5년)15%, (6년~)8%

3) (~3년)25~35%, (4년~)20~30%, 4) (~3년)35~45%, (4년~)30~40%

5) 최대 2%[(R&D 지출액 / 매출액) × 0.5]

□ (통합투자세액공제) 기업의 사업용 설비와 시설 등(토지, 건물 등 제외)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 세액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단위: %) >

구분	당기분(기본공제)			증가분 (추가공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1	5	10	+
신성장·원천기술	3	6	12	
국가전략기술	15	15	25	
↳ 반도체	20	20	30	
				10

※ 총 투자세액공제액 = (투자액 × 당기분 공제율) + (3년 평균 대비 투자 증가분 × 증가분 공제율)

1) 국가전략기술 : 8개 분야*, 71개 기술, 58개 시설

* ①반도체, ②이차전지, ③백신, ④디스플레이, ⑤수소, ⑥미래형 이동·운송수단, ⑦바이오의약품, ⑧인공지능

2) 신성장·원천기술 : 14개 분야*, 273개 기술, 186개 시설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 SW 및 보안, ④콘텐츠, ⑤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 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소·부장, ⑬탄소중립, ⑭방위산업

② 추진 배경

- ☐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분야가 포함('25.3월 조특법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등재

③ 개정 내용

- ☐ (세부기술 신설) AI 혁신 생태계 구성에 필수적인 주요 AI 기술들을 5개 카테고리로 정리하여 선정

세부기술	기술 설명
생성형 AI 기술	텍스트, 이미지 등을 생성하는 AI 기초모델 개발
에이전트 AI 기술	기계장치와 연동하여 자율적 행동 및 산업공정 운영에 활용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학습 알고리즘(메타러닝, 강화학습 등)을 활용하여 AI 성능 향상
저전력·고효율 AI 컴퓨팅 기술	작은 기계 등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량화·최적화
인간 중심 AI 기술	인간이 AI의 의사결정 과정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 ☐ (사업화시설 신설) 해당 국가전략기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센터를 지정하여 AI 인프라 조성 전폭 지원

④ 적용 시점

- ☐ '25.3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과 동일하게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 또는 투자 분부터 적용

[2]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상세본 p.5)

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소득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 (대상콘텐츠)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상 웹툰* 및 디지털만화**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

**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진 만화를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처리하고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만화

- (공제비용) 기획·제작 인건비, 원작소설 저작권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 웹툰 및 디지털만화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28년말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 (공제율) 10%(중소기업 15%)

- (공제시기)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개정 취지) 웹툰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② 적용 시점

☐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비용 분부터 적용

[3]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상세본 p.6)

① 현행 제도

□ 영화·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 (공제율) 기본공제율과 추가공제율*을 더한 값

* 국내 제작비 비중 80%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한 콘텐츠에 적용

- (기본공제율) 10%(대기업 5%, 중소기업 15%)

- (추가공제율) 10%(중소기업 15%)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기본공제율을 추가공제율과 일치 및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기본공제율) 10%(중소기업 15%)

○ (추가공제율) 10%(중소기업 15%)

□ (개정 취지) 영상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③ 적용 시점

□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비용 분부터 적용

[4]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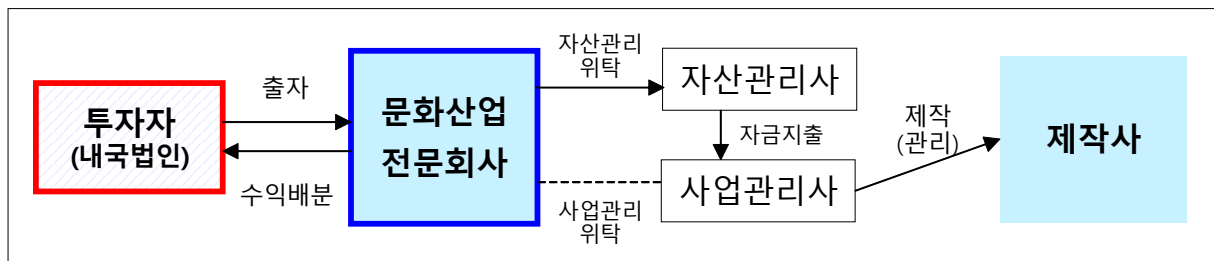
(상세본 p.7)

① 현행 제도

-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경우 해당 투자액의 3%를 세액공제

② 문화산업전문회사 현황

- (개요) 문화산업 프로젝트만을 수행하고, 수익을 투자자 등에게 배분하는 특수목적회사



- (현황) 영상콘텐츠(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전체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약 78%*

* (전체) 누적 818개사, 운영중 336개사 (영상콘텐츠) 누적 637개사, 운영중 263개사

③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8.12.31.까지 연장
- (개정 취지) 양질의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여력이 풍부한 대기업의 투자 유인 확대

[5] 국가전략기술 미래형 운송·이동수단 분야 세제지원 확대 (상세본 p.1)

① 추진 배경

- ☐ 국가전략기술에 미래형 운송(미래형 선박 등) 분야가 포함
(‘25.3월 조특법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등재
 - 미래 자율주행 기술력 확충 등 생태계 강화 지원 위해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도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등 확대

② 적용 시점

- ☐ (미래형 선박) ‘25.3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과 동일하게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 또는 투자분부터 적용
- ☐ (자동차 자율주행) ‘25.3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과 무관한 내용으로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 또는 투자분부터 적용

③ AI 지능형 자율운항(미래형 선박)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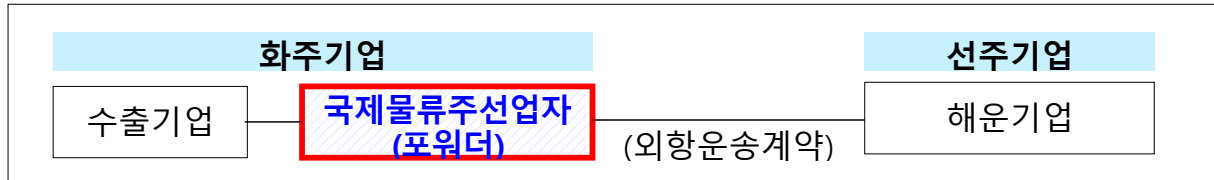
- ☐ 미래형 선박의 ‘인공지능 자율운항’ 기술은 ❶자율운항, ❷기관 자율화 및 ❸사이버 보안 등을 포괄
 - ※ ❶ (자율운항) 항로 최적화, 항해 상황인식, 원격 운용 등
 - ❷ (기관 자율화) 선내 통합 제어시스템, 고장 진단, 원격 지원 및 예측
 - ❸ (사이버 보안) 시스템 접근 차단, 암호화 및 사용자 인증 등

[6]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개편

(상세본 p.8)

① 현행 제도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해 외항 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의 일정 비율 세액공제



- (공제요건)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 비중이 전체 운송비용의 40% 이상이고, 해당 비중이 전년대비 증가
- (공제율)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의 1% + 전년대비 증가액의 3%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공제율 조정) 물류안보 및 공급망 안정성 지원을 위해 중요도가 높은 원양노선 이용에 대한 유인을 강화

- 전체 운송비용에 대한 공제율은 하향(1% → 0.5%)하되, 원양노선에 대한 운송비용에 대한 추가 공제 1% 신설

개정 전/후 공제율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해상운송비용의 1% (+증가분의 3%) 일률적으로 공제	(연근해 노선) 운송비용의 0.5% (원양 노선) 운송비용의 0.5% + 추가 1%*
	* 전체 원양해상 물동량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물동량이 25% 이상

- (공제요건 합리화) 운송 실적 기준을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물동량” 기준으로 변경해, 화주기업의 예측가능성 제고

* 운송비용은 변동성이 높은 운임의 영향을 많이 받음

- 또한, 이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이용비중이 높아 추가적인 증가 여력이 크지 않은 기업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이용비중의 전년대비 증가요건” 폐지

[7]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상세본 p.10)

① 현행 제도

□ (공제대상)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에서 임시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제외

○ 상시근로자 수는 월별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한 후에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

□ (공제액) 기업규모·소재지·우대대상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 육아휴직 복귀자는 추가 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액 >

① 기본공제	공제액(단위:만원)			
	중소(3년)		중견 (3년)	대 (2년)
	수도권	지방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근로자 등	1,450	1,550	800	400
그 외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② 추가공제(1년)	공제액(단위:만원)	
	중소	중견
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 (공제기간 및 사후관리) 상시근로자 수 유지시 최대 3년간 지원,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지원 중단 및 공제받은 금액 전액 추징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사후관리 방식 전환 및 공제액 구조 재설계 등

- ①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을 근로계약 기간에서 실제 근로 기간으로 전환
- ② 사후관리 방식을 최초 공제후 1~2년간 고용 유지시 2·3차년도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후속공제 방식으로 전환
- ③ 공제 기간중 고용이 일부 감소한 경우 고용 증가 인원 중 감소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중단하고 고용 유지분에 대해서는 공제 유지

④ 공제액 구조를 점증 구조로 재설계

		공제액(단위:만원)			
		중소(3년)		중견 (3년)	대 (2년)
		수도권	지방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근로자 등	1년차	700	1,000	500	300
	2년차	1,600	1,900	900	500
	3년차	1,700	2,000	900	-
그 외 상시근로자	1년차	400	700	300	-
	2년차	900	1,200	500	
	3년차	1,000	1,300	500	

⑤ 중견·대기업의 경우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하여 고용이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

□ (개정 취지) 사후관리 방식 전환으로 납세협력비용이 경감되고, 상시근로자 판단기준 전환 및 점증 형태의 공제액 구조를 통해 기업의 고용유지 유인을 강화

○ 현행 사후관리 방식은 상시근로자 수 감소에 따른 추정세액 계산 방식이 매우 복잡하고,

- 납세자 입장에서 사후 경정청구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

* 공제기간 중 고용 일부 감소시 잔여 공제기간 동안 전체 고용 증가분에 대해 공제 배제
→ 기업 입장에서는 과세연도 종료시마다 세액공제 신청하는 것보다 최종적인 고용 증가 유지분만을 반영하여 사후 경정청구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

○ 기업의 장기고용 유인 강화를 위해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을 개선*하고, 공제액 구조를 점증 구조로 재설계

* (현행)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 → (개정) 실제 근로 기간 1년 이상

③ 적용 시점

□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 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25.12.31. 이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④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 예시

□ 중소기업(비수도권)의 경우

○ (현행) 3년간 총 22,150만원 세액공제

	Y ₀ (기준연도)	Y ₁	Y ₂	Y ₃
전체 상시근로자*	3	8 (+5)	8 (-)	10 (+2)
우대 (청년등)	2	5 (+3)	5 (-)	6 (+1)
기타 (청년등外)	1	3 (+2)	3 (-)	4 (+1)
공제세액(만원)	-	6,550	6,550	9,050
1차년도	-	(우대) 3×1,550 (기타) 2×950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감 없음)	(우대) 1×1,550 (기타) 1×950
2차년도	-	-	(우대) 3×1,550 (기타) 2×950	(전년도(Y ₂) 1차년도 공제 없음)
3차년도	-	-	-	(우대) 3×1,550 (기타) 2×950

* 1년 이상 근로계약시 고용 시점부터 상시근로자에 해당

○ (개정) 3년간 총 22,800만원 세액공제

	Y ₀ (기준연도)	Y ₁	Y ₂	Y ₃
전체 상시근로자*	3	8 (+5)	8 (-)	10 (+2)
우대 (청년등)	2	5 (+3)	5 (-)	6 (+1)
기타 (청년등外)	1	3 (+2)	3 (-)	4 (+1)
공제세액(만원)	-	4,400	8,100	10,300
1차년도	-	(우대) 3×1,000 (기타) 2×700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감 없음)	(우대) 1×1,000 (기타) 1×700
2차년도	-	-	(우대) 3×1,900 (기타) 2×1,200	(전년도(Y ₂) 1차년도 공제 없음)
3차년도	-	-	-	(우대) 3×2,000 (기타) 2×1,300

* 실제 근로 기간 1년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상시근로자에 해당

⑤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적용 예시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5명을 적용받는 중견기업의 경우

	Y ₀ (기준연도)	Y ₁	Y ₂	Y ₃
전체 상시근로자	3	10 (+7→+2)	13 (+3→+0)	21 (+8→+3)
우대 (청년등)	2	6 (+4→+2)	7 (+1→+0)	9 (+2→+2)
기타 (청년등外)	1	4 (+3→+0)	6 (+2→+0)	12 (+6→+1)
공제세액 (만원)	-	1,000	1,800	3,100
1차년도	-	(우대) 2×500 -	(전체 상시 증가 ≤ 5)	(우대) 2×500 (기타) 1×300
2차년도	-	-	(우대) 2×900 -	(전년도(Y ₂) 1차년도 공제 없음)
3차년도	-	-	-	(우대) 2×900 -

* 최소고용증가인원수에 대한 공제액을 기타(청년등외상시근로자)에서 먼저 차감 후
우대(청년등상시근로자)에서 차감(표에서 굵은 글씨)

[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 강화

(상세본 p.15)

① 현행 제도

- ☐ 해외진출기업이 국외사업장 폐쇄·축소후 국내 복귀시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

* 7년간 100%, 3년간 50%(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 시 3년간 100%, 2년간 50%)

- 완전복귀와 달리 부분복귀의 경우 국외사업장 축소 완료 이전에 국내복귀하는 경우에는 감면 배제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 (개정 내용) 국외사업장 축소완료 이전에 국내로 복귀한 후, 사후적으로 국외사업장 축소완료하는 경우도 세액감면

	先구조조정-後복귀	先복귀-後구조조정
완전복귀(국외사업장 양도·폐쇄)	○	○
부분복귀(국외사업장 축소)	○	X → ○

- 4년 내에 축소 완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

- ☐ (개정 취지) 기업이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탄력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턴형태에 대해 지원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③ 적용 시점

- ☐ (소득·법인세) '26.1.1.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 ☐ (관세)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기 위하여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1)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상세본 p.19)

①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개정 취지) 낮은 배당성향이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으로 지적
 -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 및 경제 선순환 제고
 - (개정 내용)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14~45% 세율)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 허용
 - (고배당기업)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으로서 ①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②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 * 공모·사모펀드, 부동산리츠, SPC 등 제외
- (대상) 고배당기업 주식 소유 거주자
 - (특례소득) 현금배당액(중간·분기·결산배당)
 - (적용세율) 3단계 누진세율

과세표준	2천만원 이하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적용세율	14%	20%	35%

② 시행 시기

-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귀속되는 배당액에 대하여 지급
 - 따라서, 시행 첫 해에는 '27년도 결산배당을 통해 산정되는 배당성향 및 배당증가액에 의해 고배당 기업 여부 판정

③ 적용 사례

- ☐ (가정) A기업이 '26년 사업연도 기준으로
'26.8월에 중간배당(❶), '27.4월에 결산배당(❷) 시행
 - A기업의 '26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40% 이상
- ☐ (특례 적용)
 - A기업 주주는 '27년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27.5월)를 통해 '26년 소득인 중간배당(❶)에 대해 특례 적용 가능
 - '27년 소득인 '26년 사업연도의 결산배당(❷)은 '28년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28.5월)시 특례 적용 가능

④ 납세 절차

- ☐ 특례 대상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원천징수를 통해 종결
- ☐ 특례 대상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특례 적용을 위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시 함께 신고할 필요

[2]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상세본 p.20)

① 현행 제도

- ☐ (적용대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 ☐ (과세방식)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 지출액으로 환류한 금액이 당기 소득의 일정 비율에 미달한 경우 20% 추가 과세
 - ①, ② 방식 중 선택 허용
 - ① [기업소득 × 70% -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 × 20%
 - ② [기업소득 × 15% - (임금증가+상생협력)] × 20%
 - ※ 당기소득 3천억원 초과분은 제외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의 비율 상향

구 분		현 행	개 정 안
환류대상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지출액	(좌 동) + 배당
기업 소득 비율	투자포함형(①)	60~80%*	65~85%
	투자제외형(②)	10~20%**	20~40%

* 대통령령에서 70%로 규정 / ** 대통령령에서 15%로 규정

- ☐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③ 배당을 환류대상에 포함한 이유

- ☐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극복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필요
 - 배당 증가시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 및 배당을 선호하는 주주의 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선순환 기대

[3] 국제결제은행(BIS) 국내 투자소득 비과세 신설

(상세본 p.21)

① 개정 취지

- (현황) 국제결제은행(BIS*)은 글로벌 중앙은행 간 협력을 위한 국제금융기구로 중앙은행·국제기구 등이 예치한 자금을 주요국 자산에 투자 중

* '25.4월 기준 63개국 중앙은행 회원 가입

- BIS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과세 대상인 국채·통안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투자

* (법인법 §93의3)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채에 대한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 (개정 취지) BIS는 원화표시자산 투자 확대를 위해 국채·통안채 이외에 예금·RP·파생상품 등 투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요청

* 미국·일본 등 다수국은 BIS에 대해 협정·별도법령·면세조항 등에 따라 투자소득 면세 적용 중

② 기대 효과

- BIS의 원화자산 투자 확대를 통한 ❶국내 금융기관의 영업기회 확대, ❷외환시장 참여자 다변화, ❸시장 유동성 제고 등 기대

[4]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상세본 p.22)

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현행 제도)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건축물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기존 자산의 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개정 내용) 대체취득 대상에 유가증권(국내 상장법인 주식, 국·공채)을 추가하고, 대체취득한 유가증권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다만, 동종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시에 한정*
 - * 토지등 매각 → 토지등 대체취득, 유가증권 매각 → 유가증권 대체취득
- (개정 취지) 대학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수익성이 높은 자산으로 대체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대학 재정건전성 지원

② 과세이연을 통한 대학의 조세회피 가능성 우려

- 수익용 기본재산의 매도는 원칙적으로 교육부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조세회피 가능성은 낮음
 - 참고로 수익용 기본재산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대학운영 경비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음
- 또한, 법인세법상으로도 사후관리 요건을 강화할 예정
 - 과세이연 후 기본재산을 대체취득하지 않거나, 「사립학교법」 위반 시 그동안 과세이연 받은 세금을 즉시 추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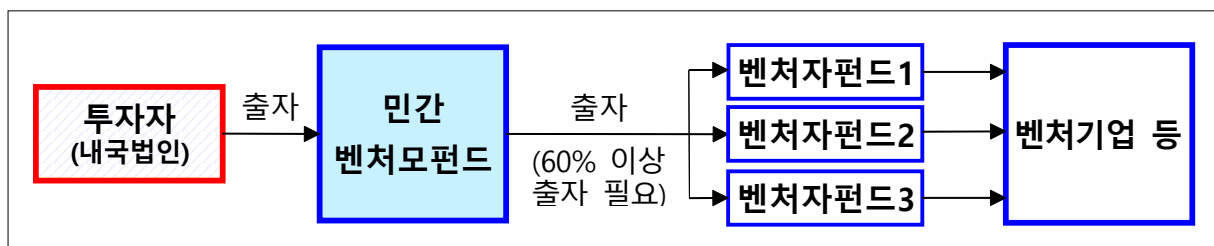
[5]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상세본 p.23)

① 개정 내용

- ☐ (현행 제도)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
 - (일반공제)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금액*의 5%
 - * 벤처기업 등 주식 취득가액과 민간 벤처모펀드 투자액의 60% 중 큰 금액
 - (추가공제) 벤처기업 등 출자 증가분의 3%
- ☐ (개정 내용) 추가공제 공제율을 3→5%로 상향
 - ※ 일반공제 공제율(출자금액의 5%)은 현행 유지
- ☐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② 민간 벤처모펀드의 구조

- ☐ 민간 출자금을 모집해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
 - 조성액의 60% 이상은 벤처자펀드에 출자 필요



③ 추가 공제율을 상향한 이유

- ☐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실질적인 신규자금 유입이 확대되도록 인센티브를 주기 위함
- ☐ 일반 공제율은 내국법인의 다른 벤처투자(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간접 출자)에 대한 공제율(5%)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행 유지

[6]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신설

(상세본 p.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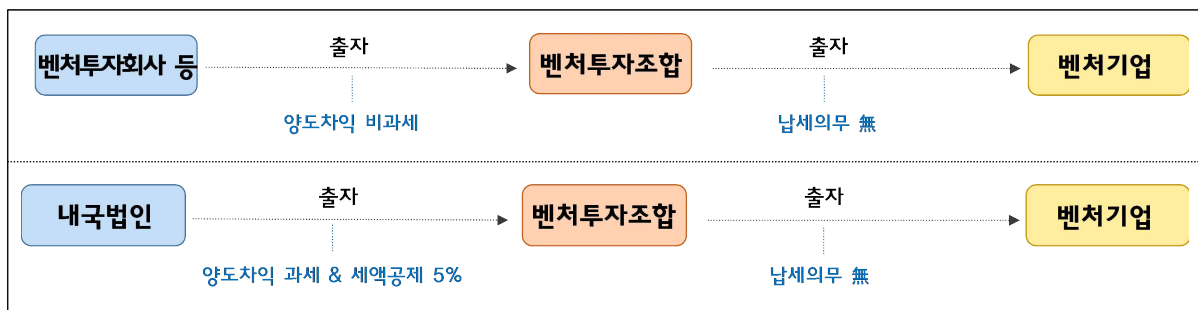
① 현행 제도

□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에 대해 출자자에 따라 주식 양도차익 등 비과세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 중

○ (개인 및 벤처투자회사) 양도차익(양도소득) 비과세

○ (일반 내국법인) 출자금액의 5% 세액공제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시 세부담>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내용 및 취지) 벤처투자조합이 설립한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비과세, 세액공제) 적용

* 벤처투자조합 단독으로 100% 출자해 설립하는 투자목적회사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가 벤처투자 단계에 추가 되더라도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함

□ (적용기한) '28.12.31.

**[7] 민·관 합동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이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

- 첨단·벤처·혁신 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 합동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방안을 금융위 등 관계 부처에서 검토 중이나, 투자 대상 산업 등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
- ⇒ 추후 펀드 조성 방안이 보다 구체화되면 세제 혜택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

3. 지역성장 지원

[1]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상세본 p.29)

① 현행 제도

☐ 거주자가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 (공제율) (~10만원) 100/110 (10만원 초과) 15%[특별재난지역 30%]

** (세액공제 적용 기부한도) 2,000만원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40%로 상향

* (현행) (~10만원) 100/110, (~2천만원) 15%[특별재난지역 30%]

(개정안) (~10만원) 100/110, (~20만원) 40%<신설> (~2천만원) 15%[상동]

☐ (개정 취지) 기부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지원

③ 적용사례 (20만원 기부 시)

☐ 20만원 기부 시 세액공제 14.4만원*

* 10만원까지 전액(지방소득세 포함) + 10만원 초과분의 44%(지방소득세 포함)

⇒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기부금액의 30% 한도, 6만원) 감안 시 총 20.4만원 혜택

[2]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상세본 p.30)

① 현행 제도

- ☐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투자 또는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 매각시 양도차익 과세이연(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기업이 사업재편(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신사업 진출 등)을 추진하기 위해 작성하여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계획

○ (적용기한) '26.12.31.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 (개정 내용)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매각 시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현재 여수 지정)

- ☐ (개정 취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취지를 고려

○ 해당 지역 주된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진해 위기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산업경쟁력을 조기에 회복하도록 지원

[3]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상세본 p.31)

① 현행 제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 감면율은 이전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최대 12년간 감면

- * ① 5년 100% + 2년 50%: 수도권 연접지역, 지방 5대 광역시, 중규모도시(인구 30만 이상) 등
 ② 7년 100% + 3년 50%: 지방 5대 광역시 및 중규모도시 중 낙후지역 등
 ③ 10년 100% + 2년 50%: 그 외 낙후지역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기간 확대, 감면한도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28.12.31.)

- 100% 감면기간 종료 후,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기간을 연장
 ○ 중규모도시* 내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10년간 100% + 5년간 50% 감면

* 구미시, 김해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청주시 및 포항시의 관할구역

지방이전 세액감면기간 확대

	낙후지역 ¹⁾		그 외 지역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수도권 ²⁾	5년 100% +2년 50%	5년 100% +3년 50%	< 감면 없음 >	
수도권 연접지역 ³⁾	5년 100% +2년 50%	5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5년 100% +3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3년 50%	7년 100% +4년 50%	5년 100% +2년 50%	5년 100% +3년 50%
중규모도시	7년 100% +3년 50%	10년 100% +5년 50%	5년 100% +2년 50%	5년 100% +3년 50%
그 외	10년 100% +2년 50%	10년 100% +5년 50%	7년 100% +3년 50%	7년 100% +4년 50%

1) 인구감소지역, 성장촉진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2)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 이전하는 경우만 적용(본사 이전은 미적용)

3) 당진시, 아산시, 원주시, 음성군, 진천군, 천안시, 춘천시, 충주시, 홍천군(내면 제외), 횡성군

- 이전기업의 지방에 대한 투자·고용과 연계된 감면한도 신설*

* 지방 투자누계액의 70% + 지방 근무 상사근로자 1인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 (개정 취지) 인구감소지역 등 낙후지역으로의 지방이전 촉진
유인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투자·고용 확대 유도

③ 적용 시점

- '26.1.1.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 '25.12.31. 이전에 기존 공장·본사를 철거·폐쇄하는 등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4]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신설

(상세본 p.32)

① 개정 내용

- (개정 내용) 개인·법인이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납부·과세이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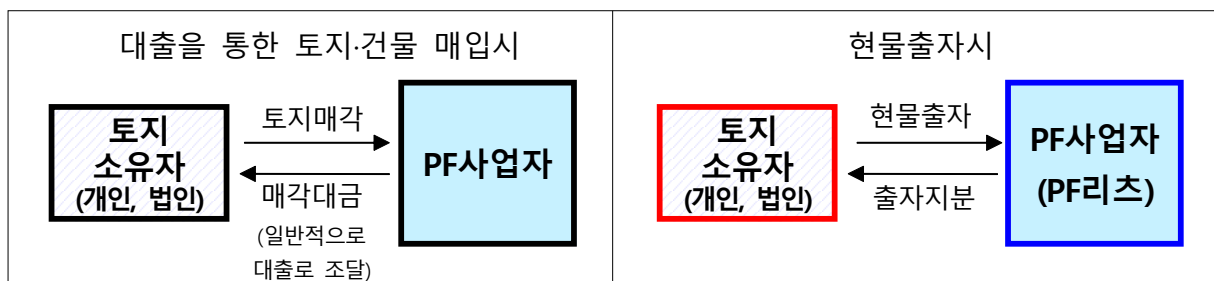
*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리츠)

- (개인)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 납부이연
- (법인)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차익 과세이연

- (적용 기한) '28.12.31.

② 제도 신설 취지

- 프로젝트 리츠를 통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지원
 - 토지 소유주 등의 세금부담 완화를 통해 PF 사업 시 대출을 통한 토지·건물 매입보다 현물출자(주주로 참여)하도록 유도
 - PF사업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고, 프로젝트 리츠의 자기자본비율 상향



2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1.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 확대

(1)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상세본 p.34)

① 현행 제도

□ 근로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25.12.31.)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주요내용 >

구 분	내 용																				
공제대상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 등 : 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체육시설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40%																				
공제한도	<table><tr><th colspan="2" rowspan="2">공제한도</th><th colspan="2">총급여</th></tr><tr><th>7천만원 이하</th><th>7천만원 초과</th></tr><tr><td colspan="2">기본공제 한도</td><td>300</td><td>250</td></tr><tr><td rowspan="3">추가공제 한도</td><td>전통시장</td><td rowspan="3">300</td><td rowspan="2">200</td></tr><tr><td>대중교통</td></tr><tr><td>도서공연등</td><td>-</td></tr></table>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추가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	200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추가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	200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당 50만원 (최대 100만원) 상향 및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

		현행 (자녀수 무관)	개정안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기본 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250만원	250만원	275만원	300만원
추가 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	(좌 동)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200만원			

- (개정 취지) 자녀 양육에 따른 생계비 부담 증가*를 감안하여 근로자 세부담 경감

* 월평균 가계지출('24.4분기) : (전체) 391만원

(1인가구) 232만원 (2인가구) 351만원 (3인가구) 506만원 (4인이상) 630만원

③ 총급여 기준에 따라 한도 상향폭을 차등한 이유

- 차등하지 않고 한도상향시 실효세율이 높고 소비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

⇒ 한도 차등을 통해 서민·중산층에 보다 많은 혜택이 귀착되도록 설계

④ 적용 사례

- ☐ 부양자녀 2명, 상향된 한도까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도 상향에 따른 세부담 감소 사례

		총급여 6천만원	총급여 1억원
현 행	근로소득공제	1,275만원	1,475만원
	기타 소득공제 합계*	1,300만원	1,700만원
	과세표준	3,425만원	6,825만원
	한계세율	15%	24%
개정안	근로소득공제	1,275만원	1,475만원
	기타 소득공제 합계*	1,400만원(+100만원)	1,750만원(+50만원)
	과세표준	3,325만원(-100만원)	6,775만원(-50만원)
	한계세율	15%	24%
세부담 차이		△15만원	△12만원

* '23년 귀속 근로소득세 신고자료상 해당 급여구간 평균 소득공제액(근로소득공제 제외)

[2]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상세본 p.35)

① 현행 제도

☐ 보육수당*에 대해 월 20만원 한도 내 비과세

*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변경

☐ (개정 취지) 자녀 수에 비례한 양육비 부담 완화

③ 적용 사례

☐ 자녀 둘을 키우는 근로자 A*는 회사로부터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총 월 40만원(연 480만원)을 보육수당으로 수령

* 총급여 6천만원, 한계세율 15% 가정

○ (현 행) 연 240만원 비과세(월 20만원 × 12개월)

* 나머지 연 240만원은 과세

○ (개정안) 연 480만원 비과세(월 20만원 × 12개월 × 2인)

⇒ 연 240만원 × 한계세율 15% = △36만원 경감

[3]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상세본 p.37)

① 현행 제도

- ☐ 근로자·성실사업자 등이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15%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주요대상 >

구 분	주 요 대 상	한도
본인	▶ 대학원비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수강료	한도 없음
장애인	▶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	
취학전 아동	▶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 학원 및 체육시설업자에게 지급한 교육비	300만원
초중고생 대학생	▶ 수업료·입학금 등 공납금 ▶ 방과후학교 수업료 및 교재비(초중고생) ▶ 급식비·교과서대금(초중고생) ▶ 교복구입비(중고생, 한도 50만원)	초중고생 : 300만원 대학생 : 900만원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 (개정 내용)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 나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 (개정 취지) 맞벌이 부부* 등 가정 돌봄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자녀를 학원에 보냄에 따라 발생하는 돌봄비용 부담 경감

* 맞벌이가구 비중(% , 통계청): ('15)44.2 ('20)45.0 ('21)45.9 ('22)46.1 ('23)48.2 ('24)48.0

③ 적용사례

- ☐ (사례 1: 월 예체능 학원비 20만원) 240만원 × 15% = △36만원

- ☐ (사례 2: 월 예체능 학원비 30만원) 300만원(공제한도) × 15% = △45만원

※ 초등학교 1~2학년 월평균 예체능 사교육비: 19.8만원
('24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통계청)

[4]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상세본 p.38)

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

☐ (개정 취지) 부모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용돈 등을 해결하는 경우 교육비를 공제 받지 못하는 현실 고려

② 적용 사례

☐ 대학생 A는 용돈, 기숙사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방과 후 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여 연 소득 720만원 발생

* '25년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 3시간 × 20일 × 12개월 = 720만원

☐ 이 때 근로자인 부모가 자녀인 대학생 A를 위하여 대학 등록금(연 600만원)을 납부하는 경우

○ (현 행)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대학생 자녀 A의 소득요건 초과*)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

○ (개정안)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연간 등록금 600만원 × 15% = △90만원 세액공제

[5]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상세본 p.39)

① 현행 제도

□ 근로자·성실사업자 등의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

< 월세세액공제 주요내용 >

대상자	무주택자로서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 7천만원) 이하 세대주*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수도권 및 도시지역: 85㎡ 이하, 수도권 외: 100㎡ 이하
공제율·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17%(5,500만원 초과자 15%), 연 월세액 1천만원

*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하고, 3자녀 가구에 한해 월세세액공제 대상주택 규모 상향

① (대상자)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주거를 달리 하는 경우*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부부합산 연 1,000만원)

*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에 위치

② (대상주택) 3자녀 이상인 경우 국민평형 이상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도록 적용대상 주택 규모 상향*

* (현행)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이하 → (개정안) 지역구분 없이 100㎡ 이하

□ (개정 취지) 혼인·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비 경감 지원 강화

① (대상자) 최근 주말부부가 증가*하고 있으나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세대당 1인만 공제 가능하여 혼인 패널티로 작용

* 맞벌이 중 비동거가구(%): ('20)10.9 ('21)12.8 ('22)12.3 ('23)13.3 ('24)14.1

※ 세대주가 공제받으면 배우자 등 여타 세대원은 공제받지 못함

② (대상주택) 저출생 극복을 위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월세 세제지원 강화

* 85㎡ 이하 주택의 경우 방 개수가 3개이므로 다자녀 가구에 적합하지 않은 점 고려

③ 적용 사례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 각자 월세 세액공제 적용]

- 신혼부부인 A, B는 각각 총급여 7천만원인 무주택 세대로서 직장이 달라 서울, 충청에 각각 원룸을 구해 생활 중
 - A는 서울에서 월 50만원, B는 충청에서 월 30만원 월세계약을 체결
 - (현 행) 근로자 A 또는 B 중 1인만 월세 세액공제 가능
 - A: 월 50만원 $\times$ 12개월 $\times$ 15% = △90만원 세액공제
 - (개정안) 근로자 A, B 모두 각자 월세 세액공제 가능
 - A: 월 50만원 $\times$ 12개월 $\times$ 15% = △90만원 세액공제
 - B: 월 30만원 $\times$ 12개월 $\times$ 15% = △54만원 세액공제

[3자녀 이상 가구 대상주택 규모 상향]

- 자녀 3명을 둔 총급여 8천만원인 무주택 도시 근로자 A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방이 4개인 아파트(전용면적 96㎡)에서 월세(월 100만원)로 거주중
 - (현 행) 월세 세액공제 불가(국민주택규모* 초과)
 - * 수도권 및 도시지역: 85㎡ 이하, 수도권 외: 100㎡ 이하
 - (개정안) 월세 세액공제 가능
 - 연 월세액 1,000만원(한도) $\times$ 15% = △150만원 세액공제

[6]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상세본 p.44)

① 현행 제도

□ 사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시 저율 분리과세

* 연금저축계좌(보험·펀드·신탁) + 퇴직연금계좌(DC형, IRP 등)

- (본인 납입액 중 세액공제분·운용수익) 연금 수령나이에 따라 3~5%*, 사망시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 계약시 4%** 적용

* 연금소득(1,500만원↓)세율: (55~69세)5% (70~79세)4% (80세 이상)3%, (종신) 4%

** 종신계약의 경우 4%와 연령별 세율 중 낮은 세율 적용

- (이연퇴직소득*) 연금 수령시 수령연차에 따라 연금외수령시 세액**에 비해 30~40% 감면(10년 이하: 30%, 10년 초과: 40%)

* 사용자부담 퇴직금으로서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아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

** 연금외수령시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이연퇴직소득세에서 연금외수령한 비율만큼 원천징수)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연금 형태로 수령시 저율 분리과세 세율 인하

- 본인 납입액 등을 연금으로 종신수령시 세율 4 → 3% 인하
- 퇴직소득을 '20년 초과 연금수령시 감면 확대(감면율: 40→50%)

□ (개정 취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일시금 대신 장기 연금수령 유도 필요

[7] 임목 벌채 · 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상세본 p.46)

① 현행 제도

- ☐ 조립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을 벌채·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연 600만원까지 비과세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 (개정 내용) 비과세 한도를 연 600만원에서 연 3천만원으로 상향

- ☐ (개정 취지) 농어업과의 형평성, 그간의 물가상승 등 감안

- 농어가부업소득의 경우 비과세 한도를 점진적으로 상향*한 반면, 임업 소득의 경우 '94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점 고려

* (~'93년) 500만원 → ('94년) 600만원 → ('95년) 800만원 → ('96~'08년) 1,200만원
→ ('09~'11년) 1,800만원 → ('12~'15년) 2,000만원 → ('16년 이후) 3,000만원

[8]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 출자시 세제지원방식 전환 (상세본 p.47)

① 현행 제도

-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자경 농지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지원 중
 -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의 한도 적용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농지 출자시 양도소득세 지원방식을 세액감면에서 이월과세* 방식으로 전환
 - * 농지를 양도하는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수한 법인이 양도 시 해당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
- (개정 취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농업인이 농지를 양도·용도 변경하는 대신 농업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감면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이월과세 방식으로 전환하여 농지를 출자하는 농업인이 세부담이 없도록 지원

[9]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범위 합리화

(상세본 p.48)

① 현행 제도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25년말까지 비과세('76년 이후 비과세)

*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단위·품목조합, 새마을금고의 지역·직장금고, 신협·지역·직장조합

- (저율 분리과세 전환) ('26년) 5% 분리 과세 ('27년~) 9% 분리과세

*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기본세율 : 14%

- (대상자) 조합원·회원 및 준조합원

- (감면한도) 예탁금 3천만원, 출자금 2천만원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과 소득이 낮은* 준조합원등에 대해서는 예탁금등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 3년 연장(~'28.12.31.)

* 서민형ISA 가입조건과 동일한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적용

- 다만, 농어민 외 소득이 높은 준조합원등은 저율 분리과세 ('26년 5%, '27년~ 9%) 적용

구 분			현 행	개 정
농협·수협 산림조합	조합원		비과세	비과세
	준조합원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비과세	비과세
		총급여 5천만원 초과**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
신협* 새마을금고*	조합원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비과세	비과세
	회원	총급여 5천만원 초과**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

* 준조합원 및 준회원이 없음 ** 종합소득금액은 3,800만원 기준

※ (시행 시기) '26.1.1. 이후 출자 또는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 취지) 농어민·서민층 지원을 위해 비과세 혜택을 3년 연장

- 다만, 비과세 혜택의 장기 지속, 상호금융 이외 금융기관과의 공정경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소득이 높은 준조합원 등은 예정대로 분리과세 시행

③ 농어민 지원 축소 및 상호금융 경영여건 악화 우려

- 농어민과 임업인이 대상인 농·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비과세는 연장
 - 동 제도 외에도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농어민형 ISA 등 여러 조세지원 제도가 있는 점도 고려 필요
- '25.9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5천만원→1억원), 일부 가입자에 대하여 과세전환 시에도 저율(5~9%)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점 고려할 필요

2. 소상공인 등 세제지원 확대 및 상생협력 지원

(1)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상세본 p.53)

① 현행 제도

□ (일반한도) 기업업무추진비로 지출한 금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을 허용

○ (기본한도) 1,200만원(중소기업은 3,600만원)

○ (수입금액별 한도)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

수입금액	비율
100억원 이하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x 0.2%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x 0.03%

□ (추가한도) 특정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손금 인정

○ (문화비*) 일반한도의 20%까지 추가로 인정

*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회·박물관 입장료, 음반·영상물 구입비, 도서구입비 등

○ (전통시장 지출액) 일반한도의 10%까지 추가로 인정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에 대해서도 추가 손금산입 허용(전통시장 지출액에 포함)

○ 전통시장 지출액의 손금산입 한도를 상향(10→20%)

○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개정 취지) 지역경제 소비 촉진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

[2]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 (상세본 p.54)

① 현행 제도

☐ (납입단계)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 (공제한도) 소득금액에 따라 연 200~600만원

☐ (수령 단계) 소득공제 받은 불입액 및 이자에 대해 과세

○ (과세방법) 폐업·퇴임·노령 등으로 공제금 수령시 세부담이 낮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나,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으로 과세

*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근속연수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

** 세율 15%로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신고(기타소득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 단, 천재지변, 해외이주, 임원·요양, 120개월 이상 가입자의 경영악화* 등 사유로 중도해지시 퇴직소득으로 과세

* 직전 3년 대비 수입금액이 50% 이상 감소한 경우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시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영악화 요건 완화(직전 3년 대비 수입금액 50% 이상 감소 → 20% 이상 감소)

☐ (개정 취지) 경영악화로 인해 노란우산공제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세부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지원 확대

[3]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완화

(상세본 p.55)

① 현행 제도

- ☐ 폐업하고 3년 이내에 재기*하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5천만원 미만인 체납액에 대해 분납을 허용하고,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1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거나 3개월 이상 근로자로 근무한 자

**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 (개정 취지) 최근 폐업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 지원을 확대할 필요

* 폐업자(천명): ('20) 895 ('21) 885 ('22) 867 ('23) 986

- ☐ (개정 내용)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체납액 요건도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

* 특수형태근로자(보험설계사 등)로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한 자

** '18년 정리보류액 중 체납액 5천만원 이하 비중(87.3%) ≈ '24년 정리보류액 중 체납액 8천만원 이하 비중(86.3%)

③ 적용 사례

- ☐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5천만원 미만의 체납이 남았으나 무재산으로 국세 납부가 곤란한 영세 자영업자가 특수고용직으로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하여 재기하는 경우 특례 적용 가능

[4]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 신설

(상세본 p.57)

① 현행 제도

-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를 '25.12.31.까지 취득하여 제조·가공 및 공급한 경우 취득가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만큼 매입세액으로 공제
 - (공제율) 재활용폐자원은 3/103, 중고자동차는 10/110
 - (공제한도)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과세표준 × 80%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매입가액'만큼 한도 적용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 (개정 내용)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대해서도 재활용폐자원과 유사하게 공제한도를 신설
 - (공제한도) 과세표준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매입가액
 - (이월공제) 2개 과세기간(1년)간 이월공제 허용
- ☐ (개정 취지) 부당 매입세액공제 방지 등 제도 합리화

[5]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기부금 손금인정 확대 (상세본 p.58)

① 현행 제도

- ☐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 대비 일반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더 높게 인정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및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구 분	일반기업	사회적기업
기부금 손금한도	(소득금액 - 특례기부금 손금인정액) x 10%	(소득금액 - 특례기부금 손금인정액) x 20%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 (개정 내용)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소득 금액의 20% → 30%로 확대
- ☐ (개정 취지) 사회적기업의 비영리성 고려하여 사회적 목적 추구를 위한 지출* 지원 확대

* 사회적기업은 회계연도별로 배분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2/3 이상을 공익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점 감안

[6]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상세본 p.60)

① 현행 제도

- ☐ 감가상각 제도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내용연수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안분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는 제도
- ☐ 현재 기업이 취득한 기계장치 등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시 기준 내용연수의 25% 범위에서 내용연수 단축·연장 가능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 (개정 내용)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등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기준 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단축 허용)
- ☐ (개정 취지) 중소기업이 자산취득에 소요된 투자금액을 조기에 비용 처리하도록 하여 투자 인센티브 제공
- ☐ (적용기한) '28.12.31.

③ 가속상각 특례 적용 예시

- ☐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를 취득한 중소기업이 가속상각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비용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기존 감가상각 (내용연수: 10년 가정)										
내용연수 25% 단축 (내용연수: 8년)										
내용연수 50% 단축 (내용연수: 5년)										

3. 납세자 권익보장 및 편의 제고

(1)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 합리화

(상세본 p.62)

① 현행 제도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 증여한 자(배우자·직계존비속)가 당초 취득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 계산(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단,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에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 당시 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이월과세 적용 배제)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에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 배제(현행 배우자 사망한 경우와 동일)
- 이월과세는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운영 중
조세회피 적용 사례

'05년	① A, 1억에 건물 취득						
'20년	② A → B(A 배우자)에게 증여, 증여재산가액 6억 ↳ 증여세 부담 없음,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억원 적용						
'22년	③ B, 6억에 건물 매도						
<table><tr><th><A 생존시></th><th><A 사망시></th></tr><tr><td>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 [이월과세 적용 O] 양도세 부담 있음 양도차익 = 6억원(양도가액) - 1억원(A 취득가액) = 5억원 </td><td>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배제 ▶ [이월과세 적용 X] 양도세 부담 없음 양도차익 = 6억원(양도가액) - 6억원(증여재산가액) </td></tr><tr><td> ■ (상속세) 해당 없음 </td><td> ■ (상속세) 납부 → 조세회피 가능성 없음 ▶ A 사망시 상속세과세가액에 6억원(사전 증여재산*) 포함, 상속세 납부 </td></tr></table>		<A 생존시>	<A 사망시>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 [이월과세 적용 O] 양도세 부담 있음 양도차익 = 6억원(양도가액) - 1억원(A 취득가액) = 5억원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배제 ▶ [이월과세 적용 X] 양도세 부담 없음 양도차익 = 6억원(양도가액) - 6억원(증여재산가액)	■ (상속세) 해당 없음	■ (상속세) 납부 → 조세회피 가능성 없음 ▶ A 사망시 상속세과세가액에 6억원(사전 증여재산*) 포함, 상속세 납부
<A 생존시>	<A 사망시>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 [이월과세 적용 O] 양도세 부담 있음 양도차익 = 6억원(양도가액) - 1억원(A 취득가액) = 5억원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배제 ▶ [이월과세 적용 X] 양도세 부담 없음 양도차익 = 6억원(양도가액) - 6억원(증여재산가액)						
■ (상속세) 해당 없음	■ (상속세) 납부 → 조세회피 가능성 없음 ▶ A 사망시 상속세과세가액에 6억원(사전 증여재산*) 포함, 상속세 납부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

- 다만, 양도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사망과 마찬가지로 조세회피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월과세 적용 배제
- 특히 직계존비속의 경우 증여공제규모(5천만원)가 배우자(6억원)보다 크지 않아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지 않은 측면

[2]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편

(상세본 p.67)

① 현행 제도

-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매 1일(日) 경과시마다 미납세액의 0.022% 가산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개정 취지) 납세자가 직접 일 단위 계산·납부하는 불편 완화
* 납부고지일까지는 과세관청이 가산세를 산정·고지하므로 현행 유지
- (개정 내용) 지정납부기한 경과 이후부터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일(日) 단위 → 월(月) 단위로 산정

<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현행-개정 비교 >

	법정납부기한	고지일	지정납부기한
현행	1일당 0.022% <국세청 계산> -----	X	1일(日)당 0.022% <납세자 직접 계산> ----- ...
개정	(상 동) -----	X	1월(月)당 0.67% <납세자 직접 계산> ● ● ● ...

[3]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

(상세본 p.70)

① 현행 제도

-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등기*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세액에 대한 50만원 미만의 고지서는 일반우편 허용

* 등기우편은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우편법 시행령 §6)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신고 후 무(과소) 납부세액은 고지서 발송 예측이 용이하므로 일반우편 대상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개정 취지) 행정비용 절감 및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일반우편 발송시 송달비용 연간 약 100억 원 절감 기대
- '02년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간 금액기준(50만 원)이 유지되어,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기준 상향 필요

* 소득세·부가세 부징수 금액기준 인상(30→50만원) 등으로 제한적으로 적용

- (개정 내용) 적용대상 확대 및 금액기준 상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후 무(과소) 납부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경우에도 일반우편 발송 허용
- 일반우편 발송가능 금액 기준은 50만원→100만원으로 상향

3 세입기반 확충 및 제도 합리화

1.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1) 법인세율 환원 (상세본 p.72)

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조세부담 정상화 및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을 '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과세표준(억원)	현행	개정안
~ 2	9%	10%
2 ~ 200	19%	20%
200 ~ 3,000	21%	22%
3,000 ~	24%	25%

- (개정 취지) 지난 정부에서 경기둔화,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입기반이 약화*된 측면

* 조세부담률(%): ('20) 18.8 ('21) 20.6 ('22) 22.1 ('23) 19.0 ('24^p) 17.6

** 법인세수 실적(조원): ('22) 103.5 ('23) 80.4 ('24) 62.5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세입기반 마련이 선결 과제임

②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에 역행하는 것 아닌지

□ 최근 세계 주요국은 경제·정치상황 및 재정여건 등에 따라 조세정책을 운용하는 방향도 상이

○ 최근 영국·프랑스도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등, 증세 또는 감세의 일방적 방향이 글로벌 트렌드는 아님

* (英) '23년 법인세율 19 → 25% 인상

(佛) '25년 대기업에 한해 한시적('25년) 법인세율 인상

(기본 법인세율 25%, 매출액 10억유로 이상 +5.2%p, 30억유로 이상 +10.3%p)

□ 법인세율 인상시 OECD국가 중 우리와 비슷한 경제규모인 국가들과 비교하여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비슷*한 수준

* OECD 중 G20국가: 23.4%(지방세 포함 27.4%),

OECD 중 30-50국가(GDP 인당 3만불-5천만명): 22.5%(지방세 포함 27.2%)

[2] 증권거래세율 환원 (상세본 p.73)

① 현행 증권거래세율 및 최근 조정 연혁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코스피		0.15%	0.10%	0.08%	0.08%	0.05%	0.03%	0%
	농어촌특별세	0.15%	0.15%	0.15%	0.15%	0.15%	0.15%	0.15%
코스닥		0.30%	0.25%	0.23%	0.23%	0.20%	0.18%	0.15%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개정 취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연계하여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였으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라 재검토

○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도 불분명

☐ (개정 내용) 증권거래세율을 '23년 수준(0.05%p 인상)으로 환원

③ 시장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주식시장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

* '19~'24년 증권거래세율 5회 인하 후 거래대금 2회 감소, 주가지수 1회 하락 (인하 전후 6개월 평균 비교)

○ 대내·외 경제 상황 등 경제 환경이 주식시장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

[3]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

(상세본 p.74)

① 현행 기준

-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 한하여 분리과세하며, 과세표준 3억원을 기준으로 20%·25% 세율로 과세

* 종목당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분율 1~4% /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구 분(종목당)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분율	1%	2%	4%
시가총액	50억원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 (개정 취지) 대주주 기준 완화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감세로 조세형평성 저해 우려에 따라 환원

* 대주주 기준이 변경된 연도의 연말·연초 주가지수는 상승·하락이 혼재

- '17년말 대주주 기준 강화시 주가가 상승한바 있으며, '23년말 대주주 기준 완화시 주가가 하락한바 있음

- 자본이득 중심으로 과세하는 글로벌 조세체계에 따라 기준을 강화하여 과세형평 확보

- ☐ (개정 내용) 종목당 시가총액 기준을 50 → 10억원 이상으로 조정

③ 양도세 회피를 위한 연말 매도 증가 등 시장 불안정은 없는지?

- ☐ 기준 조정에 따라 대주주를 회피하기 위한 개인투자자의 연말 매도 완화 효과는 불분명*

* 기준이 변경되지 않은 연도 간에도 순매수·순매도의 일관성이 없으며 기준이 강화된 '17년, '19년에 순매도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가 있으나 기준이 완화된 '23년도 순매도가 전년 대비 증가

- ☐ 시장 수익율이 매도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

[4] 금융·보험업 교육세 개편 (상세본 p.75)

① 현행 제도

- '81년 교육 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를 위한 교육재정 마련을 위해 한시적으로 신설된 목적세('91년 영구세 전환)
- 금융보험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종전의 금융기관 영업세(수익금액의 1%) → 교육세(수익금액의 0.5%)로 전환하여 운영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수익금액 1조원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

과표구간(수익금액)	현 행	⇒	개 정 안
0~1조원	0.5%		0.5% (현행유지)
1조원 초과			1.0%

- (개정 취지) '81년 교육세 도입 이후 현재까지 과세체계 변동이 없었으므로, 그 간의 금융·보험업 성장률* 등 고려

* 금융·보험업의 국내총부가가치 : ('81년) 1.8조 → ('23년) 138.5조 (75배 ↑)

- 또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적용 대상을 부담 여력이 있는 초대형 금융보험회사(약 60개)에 한정

(5)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상세본 p.76)

① 현행 제도

- ☐ 세법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방식을 수용하여 회계처리된 배당재원별로 구분하여 과세
 - (이익잉여금 배당) 이익의 분배로 보아 배당소득 과세
 - (자본잉여금 배당) 통상 주주가 출자한 금액을 환급받는 것으로 보아 주당 취득가액을 감액하고, 배당소득 비과세
- ☐ 다만, 감액배당액이 주식 취득가액보다 큰 경우 법인주주에 한하여 해당 초과분에 대해 배당소득 과세중
 -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감액배당은 기존에 출자한 금액을 환급받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해외국가도 일반적으로 과세
 - 다만, 개인주주의 경우 현재 개별 취득가액 파악이 곤란하여 집행가능성을 감안, 취득가액 초과분에 대해 비과세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 (개정 내용)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시 개인주주의 경우도 대주주 등*은 취득가액 초과분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

* ①상장법인의 대주주

②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 보유 소액주주 제외)

- ☐ (개정 취지) 집행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등'만 우선하여 적용

* ①상장법인의 대주주, ②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 보유 소액주주 제외)

③ 적용사례

- ① (가정1) 주주1의 A상장법인의 보유주식 평균 취득가액 2만원
A사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주당 0.2만원

○ (배당소득 과세여부) 비과세

- A사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 1.8만원($2 - 0.2$)으로 조정
- 주주1이 대주주*인 경우 향후 A주식 양도시 1주당 양도차익 0.2만원 증가하므로 감액배당을 통한 취득가액 조정분은 양도소득세로 과세이연

* 현재 대주주가 아닌 경우, 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 ② (가정2) 주주2의 B상장법인의 보유주식 평균 취득가액 0.1만원
B사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주당 0.2만원

○ (배당소득 과세여부) 과세

- B사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 0원($0.1 - 0.1$)으로 조정
- 주주2가 대주주인 경우 취득가액 초과분 0.1만원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향후 B주식 양도시 1주당 양도차익 0.1만원 증가하므로 감액배당을 통한 취득가액 조정분은 양도소득세로 과세이연

2. 과세체계 합리화

[1]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종료

(상세본 p.94)

① 현행 제도 및 종료 취지

- **(현행 제도)**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적용 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 진료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 **(환급 대상 용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의료용역

* (예)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치아미백, 여드름 치료술 등

※ (참고) 치료 목적의 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미용성형 목적은 원칙적으로 과세

- **(종료 취지)**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 등을 반영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해오던 제도를 종료

(2) 비과세·감면 정비 현황

- 일몰도래 72개 중 정비(종료·축소) 실적은 16개(5년간 4.6조원)로, 최근 5개년 평균 실적(13개, 5년간 0.5조원) 대비 적지 않은 수준

* 정비 개수(조원, 5년누적): '20년14개(0.3) '21년19개(0.1) '22년12개(0.5) '23년9개(0.1) '24년12개(1.4)

- 다만, 비과세·감면 대부분이 서민·중산층 및 농어민 지원, 투자 등 기업 활동 지원 관련으로 제도 연장이 불가피한 측면
 - 서민·중산층, 중소기업 등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비과세·감면은 제도개선을 통해 효율성 제고

[3]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 (상세본 p.77)

① 현행 제도

- 조합법인*의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 기업업무추진비 등 9개 항목**만 세무조정 후 저세율(9%, 12%)로 법인세 과세

*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중소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총 8개

** 기부금, 기업업무추진비, 과다경비,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지급이자, 대손금,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과세표준 20억원 초과구간 세율을 3%p 인상(12→15%) 하고 적용기한 연장(~'28.12.31.)
- (개정 취지) 소규모 조합법인 지원을 위해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중소기업·비영리법인과 과세형평을 위해 세율 인상

③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는 것 아닌지?

- 여력이 되는 일부 고수익 조합법인(전체 조합법인 중 11.5%)*만 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음
 - * 전체 조합법인 4,107개 중 과표 20억원 초과 법인은 474개(11.5%) ('24년 신고분)
- 과표 20억원 이하 영세 조합법인에 대한 세율은 변동이 없고, 20억원 초과구간의 경우도 일반법인 대비 세율이 크게 낮음
- 심층평가 결과* 및 농어민을 직접 지원하는 다양한 과세특례**가 운영중인 점 고려, 지원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
 - * 20억원 초과 조합법인에 대한 세율 인상이 법인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실증 증거 부족('22년 심층평가)
 - ** 농·어민의 조합법인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농·임·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등

[4]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확대

(상세본 p.78)

① 현행 제도 및 개정 취지

- **(현행 제도)**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경우 국외 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신분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16년 신설)
- **(개정 취지)** 최근 거주자의 국외주식 보유 확대를 감안, 국내외 주식 보유자 간 과세형평성 제고
 - * '27.1.1.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

② 대주주 요건 없이 국외주식 과세는 과도한 것 아닌지?

- 일반적인 주식 양도의 경우, 국내주식*과 달리 국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하는 점을 감안하여 국외주식에 대한 국외전출세에도 대주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주주 아닌 경우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비과세

③ 적용 사례

-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시가 10억원 규모(취득가 6억원)의 국외주식 보유 상태로 해외로 이민 시(영구 전출, 비거주자로 전환)

⇒ 취득가와 시가의 차액(10 - 6 = 4억원)을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여 국외전출세 과세

* 국외전출세액: (4억원 - 250만원 - 3억원) × 25% + 3억원 × 20% = 8,437.5만원

** 국외전출 후 해당 국외주식을 실제 양도하고 외국에 양도소득세 납부 시 국외 전출세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환급

(5)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상세본 p.79)

① 현행 제도 및 개정 취지

- (현행 제도) '25.1.1.부터 펀드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이 변경*되었으나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미적용 중

* (기존) 국세청 선환급 방식 → (개정) 투자자별 펀드 소득 발생 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차액을 원천징수

** 연금소득, 퇴직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 (개정 취지)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되,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점과 인출 시점 간 장기시차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공제 방식* 규정

* (일반 배당소득) 펀드가 계좌에 배당소득 지급 즉시 원천징수 및 외납공제 적용 (연금계좌 소득) 펀드가 연금계좌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단계에서는 원천징수가 없으므로, 연금계좌로부터 소득 인출에 따른 원천징수 전까지 외납공제액 적립

② 시행일('26.7.1.) 이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는?

- 시행일은 연금 사업자(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내부 전산 시스템 등 준비기간을 고려했으며,
 - 공제 방식 변경 시점('25.1.1)부터 시행일 전까지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는 공제액을 적립할 계획

③ 적용사례

※ 간접투자소득 1,000, 국외원천세율 14% 가정

□ (적립단계) 외국납부세액 140, 외납 後 소득 860, 공제적립액 77.4*

$$* \quad 140 \times \{ (9\%/14\%) - 9\% \}$$

외납세액

↳ 공제율(약55.3%)

[간접투자 소득을 연금소득으로 인출 시]

□ (공제단계) 간접투자 소득 860을 월 215씩 4개월에 걸쳐 연금 소득 수령, 연금소득세율 4%인 경우

$$\rightarrow \text{월별 원천징수세액 } 8.6(\text{연금소득} \times 4\%) \times 4\text{개월} = 34.4$$

$$215 \times 4\%$$

⇒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액 전액 공제

$$(\text{공제적립액 잔액 } 77.4 - 34.4 = 43.0)$$

[간접투자 소득을 연금 외 소득(기타소득)으로 인출 시]

□ (공제단계) 간접투자 소득 860을 연금소득과 연금 외 소득(기타 소득)으로 전액 인출*, 연금소득세율 4%, 기타소득세율 15%인 경우

$$\rightarrow \text{원천징수세액: } 8.6(\text{연금소득} \times 4\%) + 96.75(\text{기타소득} \times 15\%) = 105.35$$

$$215 \times 4\%$$

$$645 \times 15\%$$

* 연금소득 215, 연금외소득(연금소득 초과분) 645로 가정

⇒ 공제적립액(77.4) 전액 차감 후 잔여 세액(105.35 - 77.4 = 27.95) 납부

[6]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추가세 도입

(상세본 p.81)

① 내국추가세 개요 및 적용 예시

◇ 다국적기업그룹 국내구성기업의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세율 적용 시 부족과세분을 우리나라에서 우선 과세*

* 소재지국 미과세시 모기업소재국(IIR) → 타 구성기업 소재국(UTPR) 순으로 과세권 이전

□ (대상) 연결매출액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그룹 소속 국내구성기업

□ (내국추가세액 계산)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 전체의 실효세율 계산 후,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세액 부과

※ 내국추가세액 = (최저한세율 - 국내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 × 초과이익* + 당기추가세액가산액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실질 사업활동 지표인 '인건비'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일정비율)을 제외

【적용 예시】

- 우리나라에 소재한 다국적기업그룹 K의 자회사 K1, K2, K3기업의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음

구분	K1기업	K2기업	K3기업	합계
글로벌최저한세소득	1,000	2,000	3,000	6,000
조정대상조세	200	0	400	600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200	300	700	1,200
내국추가세액 계산 과정	$\text{실효세율} = \frac{600}{6,000} = 10\%,$ $\text{추가세액비율} = 15\% - 10\% = 5\%,$ $\text{내국추가세액} = 5\% \times (6,000 - 1,200) = 240$			

□ (추가세액 납부) 추가세액의 그룹 내(각 기업별) 배분은 소득에 비례하여 배분함이 원칙이나, 기업의 재량도 허용

[7]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제출 서류 추가

(상세본 p.90)

① 현행 제도

- ☐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법인세 신고 이후 정상가격* 조정 필요성이 있으면 경정청구 가능

*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 (개정 내용) 정상가격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제출서류에 이중 과세 발생 입증서류를 추가*

* 구체적 자료(예: 상대국 수정신고서 등)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 예정

- ☐ (개정 취지)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은 후 상대국에서 수정 신고하지 않는 조세회피 방지

-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과세소득 감산조정은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주요국 입법례를 감안하여 절차 합리화

[8]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

(상세본 p.91)

① 현행 제도

- ☐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관세 상당액을 수령하고 과세가격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관세 연대납세의무* 성립

* 구매대행업자가 해외 판매자와 공모하여 저가 인보이스를 수입신고인에게 제공하는 사례가 있어 연대납세의무 도입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 (개정 내용)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관세 상당액을 수령한 경우 가격정보 거짓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연대납세의무 성립
- ☐ (개정 취지) 구매대행업자의 과세가격 정보 거짓 제공여부 확인 곤란

③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 아닌지?

- ☐ 미리 받은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고 있는 대다수의 구매대행업자에게는 영향 없음
- ☐ 또한, 연대납세의무를 지고 싶지 않은 구매대행업자는 소비자가 직접 신고·납부토록 하는 방식으로 구매대행 가능

* 구매대행업자가 소비자에게 수입신고인(관세법인 등)을 연결 → 수입신고인은 통관 등을 진행하며 관세 등을 계산하여 신고·납부

[9] 우회덤핑 과세 범위 확대

(상세본 p.92)

① 현행 제도

* 관세법 제56의2조 ('23.12 신설, '25.1.1 시행)

-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덤핑물품을 공급국에서 경미* 하게 변경하여 수입하는 경우 우회덤핑으로 보아 반덤핑 조치

*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형태·포장 등을 변경

- 다만, 공급국이 아닌 제3국 등을 통한 우회덤핑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치 곤란

② 개정 내용

- 제3국에서 경미한 변경을 하거나 원재료를 제3국으로 보낸 후 덤핑물품으로 조립·완성하는 경우에도 우회덤핑에 포함

※ 해외 주요국(미국, EU, 캐나다, 호주, 인도, 베트남 등)도 제3국 우회덤핑 과세 중

- 우회덤핑에 대해서는 무역위원회의 직권조사, 조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신속한 반덤핑조치 가능

③ 적용 사례

- 철강재에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제3국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우회 덤핑방지관세 부과

- (경미한 변경) 덤핑방지관세 부과중인 A국산 강판을 B국에서 컬러 도색만 한 후 한국으로 수입
- (제3국 조립·완성) A국산 냉간압연(덤핑물품)의 원재료인 열간 압연을 B국에서 냉간압연으로 가공하여 한국으로 수입

3.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

[1] 영리법인에 유증 시 상속세 납부의무자 확대 (상세본 p.95)

① 현행 제도

- ☐ 영리법인이 유증을 받은 경우 그 영리법인은 법인세 납부의무만 있고 상속세 납부의무는 없음
- ☐ 다만, 영리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 및 그 직계비속은 유증재산의 지분상당액에 대해 상속세 납부의무 부담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 (개정 취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또는 사위)를 주주로 하는 영리법인에 유증을 통한 상속세 회피 방지
 - 며느리나 사위를 주주로 하는 법인을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조세회피 방지 필요
- ☐ (개정 내용) 상속세 납부의무자에 유증을 받은 영리법인의 주주인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 외에 “그 배우자”를 추가

[2]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신설

(상세본 p.96)

① 현행 제도

- ☐ '21년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를 통한 조세회피 행위 방지를 위해 연락사무소 현황 신고 의무 신설

* 외국본사를 위해 광고, 선전,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예비적·보조적 활동 수행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 (개정 내용)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제출시 과태료 신설
(최대 1,000만원,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 (개정 취지) '21년 현황 신고 의무 시행 이후 다수 연락사무소가 현황명세서를 미제출함에 따라 제도 실효성 확보 필요

③ 과태료 부과 기준(최대 1,000만원)이 실효성 있는 것인지?

- ☐ 「국세기본법」 상 세무조사시 거짓 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한 자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시행령, 법률상 최대 5,000만원) 부과 중으로 해당 기준을 고려한 것
- 연락사무소는 본사를 위해 국내에서 업무연락,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예비적·보조적 성격의 활동을 수행하는 점을 감안, 현재안 수준에서 우선 시행 후 실효성 여부를 추후 판단할 계획

[3] 독촉장 송달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

(상세본 p.99)

① 현행 제도

- ☐ 체납으로 인해 발송하는 독촉장을 포함한 국세와 관련된 서류의 송달비용은 모두 일반재정으로 부담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 (개정 내용) 납세자가 지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독촉장 송달비용은 해당 체납자의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
- ☐ (개정 취지) 원인자 부담원칙 적용 및 전자송달 신청 유도
 - 체납으로 인해 발생한 행정비용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체납 당사자에게 부담
 - 송달비용이 없는 전자송달 신청을 간접적으로 유도하여 행정비용 절감하고 송달 효율 향상 도모